

# 국방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

제정 2026. 4. 15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생연구자 처우, 인권 및 권익보호,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·운영 등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생연구자”란 국방대학교 석사·박사학위과정(휴학생 및 수료생도 포함한다) 중에 있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.
2. “학생인건비”란 국방대학교 소속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.
3. “전산시스템”이란 국방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용중인 연구비통합 관리시스템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방대학교 석사·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1.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2.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
3.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석사·박사 과정중에 있는 자
4.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

**제4조(산학협력단의 의무)**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1.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 활동 보장, 처우, 인권 보호 및 관리·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
2. 학생인건비 수입·지출·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
3.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
4.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, 상해·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
5. 학생인건비 부당회수(미지급 포함) 방지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연구책임자의 의무)** 연구책임자는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1.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준수
2.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,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
3. 학생인건비·연구수당 지급,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

**제5조의2(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)**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 활동 보장, 처우, 졸업요건,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·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6조(학생연구자의 의무)**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1.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
2. 연구수행 시 관련규정의 준수 및 특이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에게 보고
3.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·변경·중단·해약, 학적변동, 개인사정, 업무수행 불가능, 민간인 학생의 경우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후 변경사항 보고

**제7조(학생인건비 지급기준)** ① 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계상률 100%를 기준으로 정부의 고시기준을 따른다.

② 다만,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등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않는다.

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, 참여 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학생인건비 지급관리)**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매월 25일에서 월말까지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여야 하며,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.

**제8조의2(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)**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,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,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·기술료 보상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운영 및 관리)**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수입·지출·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목적 외 사용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중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학업·연구활동 보장, 인권 및 권익보호 등

**제10조(연간 활용계획 수립)**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,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학생연구자 운영규모,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연구참여확약체결)** ①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(별지1호 서식)를 작성하고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연구참여확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.

1. 주요 참여과제명, 연구수행내용, 역할, 참여기간 등
  2. 금전적 보상, 학생인건비 부당회수금지, 안전 및 인권·권리 보호 등
- ③ 산학협력단장, 연구책임자,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의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.

1.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·변경·중단·해약
2.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
3.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
4. 학생연구자가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
**제11조의2(업무 범위 제한)**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에 명시되지 않은 봉사활동이나 사적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.

**제12조(인격권 보장)** 폭언·폭행·성추행·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건강과 휴식 보장)**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안전 보장)**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, 학생연구자의 상해·사망에 대비하여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3조2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학업·연구권 보장)**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활용 시 학생연구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학생인건비 부당회수금지)**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재정운영 정보 공개)** ①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,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및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비율과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고충·상담 창구운영)** 산학협력단은 학내 기관 등을 활용하여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,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·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, 산학협력단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,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부당업무 거부권 보장)**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,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20조(위반 시 조치)**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기관 내 관련부서 등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조사결과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 교내 관련 부서에서는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,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.

**제21조(기타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」 등을 준용하되,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.

## 부 칙 (2026. 4. 15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본 규정 제4조 제4호 및 제14조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은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적용범위)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시점부터로 한다.

##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

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 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.

### 1. 학생연구자 인적사항

성 명		학 번		생년월일	
소 속 (학과명)		과정 및 학기	( ) 과정	( ) 학기	
국가연구자번호					
주 소					
연락처	(휴대전화번호)		(E-mail)		

### 2. 연구참여정보

가. 연구참여기간 : 20 . . . . ~ 20 . . . .

나. 참여과제명 :

다. 담당업무(역할) :

※ 연구수행내용,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 
 라.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

구분	학생인건비 계상액 합계(세금 포함)	
	월 계상액	전체 연구개발기간 합계
계상액	원	원
계상률*	%	%

\* 계상률 = 월지급액 /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

라. 학생인건비 지급일 : 매월 일

마. 지급방법 :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

※ 참여중단·종료 시 중단·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(월 등)수에 대해 일할(월할 등) 계산하여 지급함

바.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

성 명			
소 속 (학과명)		직 급	
연락처	(연구실)	(E-mail)	

3. 기타 확약사항

- 가.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.
- 나.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,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,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.
- 다.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.
- 라.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·보건교육을 실시하고, 상해·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·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- 마. 계정책임자는 인권, 양성평등,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·폭행·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.
- 바.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(학생인건비부당회수)하지 않는다.
- 사.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.
- 아.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자.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학생연구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서명 또는 인)

연구책임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서명 또는 인)

연구개발기관장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서명 또는 인)